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12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염태영·김준혁·차지호

박정현 • 백혜런 • 황명선

한준호 · 강득구 · 이수진

김문수 · 홍기원 · 김남근

이해식 • 권칠승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급발진의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의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사고원인의 파악·분석 외에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페달

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 4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며 경고음 또는 경고등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인지시키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 10의3. "페달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제어하는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 · 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오조 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이하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이라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이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이 장착

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79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4의3. 제2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이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0의2.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
	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가속페
	달을 잘못 조작하여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제동장치를 작
	동시켜 충돌을 억제하며 경고
	음 또는 경고등으로 운전자에
	게 위험을 인지시키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u> <신 설></u>	10의3. "페달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제어
	하는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
	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
	<u>능을 말한다.</u>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9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
	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
	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
	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 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와 페달영상기록장치(이하 "페 달오조작방지장치등"이라 한 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 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 치등이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 하는 경우에는 페달오조작방지 장치등이 장착되어 있음을 구 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페 달오조작방지장치등의 장착기 준, 장착사실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다.

제79조(벌직)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 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4의3. 제29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이
	<u>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u>
	알리지 아니한 자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